

| 사회적 대화 현장 |

# 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4,464일만의 합의, 그리고 복직

이동희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국내 최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으로 알려진 콜텍 노사가 4,464일 만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지난 4월 22일, 콜텍 노사는 사측의 사과와 해고자 한 달 복직이 담긴 잠정합의를 타결하고, 다음날인 23일 합의문 조인식을 가졌다. 이로써 13년째 이어진 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막을 내렸다.

## 4,464일 만에 이끌어낸 합의

콜텍 노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하여 해고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하여 사측이 깊은 유감을 표할 것 ▲2019년 5월 2일부터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 복직 후 5월30일 퇴사 ▲국내 공장 재가동 시 희망자 우선 채용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 합의금 지급 ▲민형사상 소 취하 등에 합의했다.

이에 회사는 2007년부터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위해 투쟁하며 힘겹게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노동절 다음날인 5월 2일부터 해고자 복직 투쟁을 전개해 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 3명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퇴직은 복직 후 한 달 뒤인 5월 30일로 정해졌다. 회사는 해고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복직 기간의 임금은 합의금 명목으로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 조합원을 우선 채용키로 합의했다. 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회사를 향한 금속노조의 집회, 농성 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고, 민·형사·행정상 소송 역시 취하하기로 했다.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은 “만족스러운 합의는 아니지만 13년 동안 길거리 생활을 그만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리해고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용호 콜텍 사장은 “13년을 끌어온 노사 분규가 원만하게 합의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이인근 지회장 등 노동자 세 분께서 13년 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했는데 빨리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건강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영위기’ 판단 둘러싼 법률 쟁점 부각되기도

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합의를 통해 복직한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은 회사가 경영 위기를 주장하며 국내 생산 공장을 폐쇄한 2007년부터 해고자 복직투쟁에 나섰다. 국내 공장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투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공농성부터 시작해 해외 원정투쟁, 분신과 단식 등 강도 높은 투쟁이 이어졌다.

콜텍 해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24조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위반한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을 뒤집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콜텍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0억 원 이상 상당한 액수



의 당기 순이익을 낸 점, 특히 2006년에는 7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점, 2006년 9.1%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문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이윤이 없는 '무효의 해고'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 환송심 판결에서 법원은 “현재는 흑자라 하더라도 장래에 올 지도 모를 경영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공장의 계속된 영업손실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여서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면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해 노조의 패소가 확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나온 이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쌍용차, KTX 등과 함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소개돼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콜텍 해고 노동자들은 “모든 정리해고를 합법화시키는 판결”이라며 “미래에 도래할 경영 위기를 해고 이유로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 못할 사업장이 어디 있겠냐”고 반발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투쟁을 계속해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연대였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 두발 벗고 현장으로 달려와 준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인디밴드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 지회장은 “많은 곳에서 연대해주고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마저 없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을 버티기엔 힘들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콜텍 13년 투쟁의 교훈은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콜텍 노사 잠정합의서

1. 회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하여 해고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회사는 2019년 5월 2일부터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을 복직시키되, 소급해서 근로관계를 부활시키거나 해고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위 복직자들은 5월 30일부로 퇴직한다. 복직 기간의 임금은 4항에 포함시킨다. 처우는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3. 회사는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시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한다.
4. 회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 합의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5.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본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다.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로를 상대방으로 한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소송을 취하하며, 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호간 일체의 법적·사실적 권리주장이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본 합의서 체결 후 합의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위반 당사자가 진다.
7. 위와 같이 합의가 되었으므로 본 합의서 3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4월 22일